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9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 
담당변호사 김예원  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웅주

피 고 B  
변 론 종 결 2024. 9. 3.  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/44 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2021. 5. 10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 
나.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6. 17. 접수 제25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#### 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원고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6차1454호로 C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‘C는 원고에게 19,480,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25.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6. 10. 24.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

#### 나. 상속재산분할협의

- 1) C의 어머니 E는 2021. 5. 10.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C, F, 피고, G가 있다.
- 2)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5/11 지분에 관하여, 2021. 5. 10.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고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 2021. 6. 17.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#### 다. C의 재산상태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(5/44 지분)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~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, 이 법원의 H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청구에 대한 판단

## 가. 피보전채권

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,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## 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C가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(5/44 지분)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부친 I의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사후 C 앞으로 2/11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, C의 2/11 지분을 제3자가 낙찰받은 후 피고가 E, 형제들과 상의하여 제3자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E가 사망하자 형제들과 약속한대로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 앞으로 E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<sup>1)</sup>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## 다. 취소 및 원상회복

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(5/44 지분)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/44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백소영

별지

1)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답변서에 첨부한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지

않았다.